##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17

발의연월일: 2025. 1. 15.

발 의 자:조경태·서천호·곽규택

이헌승 · 김용태 · 서지영

김소희 · 김예지 · 강명구

서범수 · 유용원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(이하 "정비사업"이라 함)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도록 하고,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인정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되,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시·도지사로 하여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·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한편,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그 지역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

서 행위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됨.

그런데 현행법은 지역·지구 등에서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등을 지역·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로 규정하되,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속하여 행위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관할 시·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 혜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하고, 지역·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의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명시함으로써,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제8조제1항, 제117조제1항제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50만제곱미터"를 "30만제곱미터"로 한다.

제11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	제8조(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
본계획의 수립) ① 농림축산식	본계획의 수립) ①
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	
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	
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	
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	
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	
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	
세워야 한다. 다만, 제2조제5호	
나목의 경지 정리, 농업생산기	
반시설의 개수・보수 및 준설	
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<u>50</u>	<u>30</u>
<u>만제곱미터</u> 미만인 농업생산기	<u> 만제곱미터</u>
반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	
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	
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	
세워야 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7조(지정 해제) ① 지역・지	제117조(지정 해제) ①
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	
해제된 것으로 본다.	

1.・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
	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이
	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
	<u>된 날</u>
<u>3.</u> (생 략)	<u>4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